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로봇랜드 조성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근거 마련〉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47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공공시설 등의 귀속 (안 제38조의2)	2
2. 조성토지 등의 처분 (안 제38조의3)	8
※ 참고자료	13
1. 로봇랜드 조성사업 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형두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12. 15.
3. 회 부 일 : 2025. 12.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 단계별 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 로봇랜드 조성사업과 유사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관련 법률에 있는 조성토지 처분 및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법 조항이 없는 상황임.

현재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 조성 토지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공공시설 관리청 이관 및 토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민자유치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완료된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통해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조성토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공시설 등의 귀속 (안 제38조의2)

개정안은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함(안 제38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38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승인서와 준공확인증명서로써 「부동산등기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

	<u>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도 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 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u>
--	--

현행법에 따르면,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고(제30조제1항),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은 사업시행자로서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받은 지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으며(제31조제1항 및 제2항)¹⁾,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의미함²⁾.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호)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한편,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단계별·시설별로 추진중에 있으나³⁾, 완료된 도로 등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공공시설의 관리청 이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 귀속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모두 행정청⁴⁾에 해당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므로⁵⁾,

3) 로봇랜드 조성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4)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등 조성사업과 같이 민간개발자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⁶⁾와 달리,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한정하는 때에는 이미 현 법령만으로도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 가능하여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지 않고도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임.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에 동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⁷⁾,

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6)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제52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제외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조성실행계획 승인 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에 ‘개발행위허가’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규정하고⁹⁾,

동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명시적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¹⁰⁾, 공공시설 등의 귀속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¹⁾.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신고·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

이러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공 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별도의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실시계획승인서 및 준공검사증으로써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하천 등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 조성토지 등의 처분 (안 제38조의3)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및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등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일정한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토지 등의 처분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8조의3(조성토지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로봇랜드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라 토지·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매각·임대 대상 토지·건축물 등의 용도, 매각·임대 및 위탁 경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제2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되는 개발사업이나¹²⁾, 조성토지 등의 매각·임대 또는 시설 위탁경영 등 처분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및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조성토지 등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기 정상화 및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38조의3제1항은 사업시행자 외에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도 토지·건축물 등의 매각 또는 임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 법인 또는 단체도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음¹³⁾.

12) 로봇랜드 조성사업 현황은 참고자료 1 참조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이에 따라 민간 법인 또는 단체가 로봇랜드에 조성된 토지·건축물 등의 매각 또는 임대 등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등으로 한정되는 민간위탁의 범위¹⁴⁾를 벗어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38조의3제2항은 사업시행자 및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토지·건축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조성원가만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혹은 조성원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매각가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성원가 기준을 적용하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⁵⁾.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1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012호)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셋째, 조성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주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조성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¹⁶⁾, 무분별한 매각·임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에 조성토지 등의 처분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는 조성토지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이라는 로봇랜드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¹⁷⁾,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 산업 투자 기업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조성토지 공급대상에서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은 제외한다.

16)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매각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로봇랜드에 조성되는 공익시설에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어 승인 및 고시된 조성실행계획에 따라서 관리·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¹⁸⁾,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 등을 임의로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할 수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64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1. 로봇랜드 조성사업 현황¹⁹⁾

1. 사업 개요

	인천 로봇랜드	경남마산 로봇랜드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사업기간	'09~'27년	'09~'26년
총사업비 (억원)	7,113 (국 595, 시617, 민간5,901)	7,000 (국 560, 도1,000, 시1,100, 민간4,340)
추진 근거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0조~제40조	

2. 개발 현황

- ☐ 인천 로봇랜드는 로봇타워, R&D센터 설립 후 산업단지 및 테마파크 등 사업 진행을 위한 부지정비 공사 진행중(~'26.8)
- ☐ 경남 로봇랜드는 테마마크, 컨벤션센터, R&D센터 등 1단계 사업 종료 후 관광·숙박업 등 2단계 민간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 협의중(~'26)

【 로봇랜드 개발 현황 (노란색 표시 부분이 이미 개발된 지역) 】

	인천 로봇랜드	경남마산 로봇랜드
조감도		
주요 시설	로봇타워(기업입주공간), R&D 센터	테마파크, 컨벤션센터, R&D 센터
법률상 가능 시설	로봇 전시관, 로봇 경기장,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19) 자료: 산업통상부